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송명화 의원입니다.
- 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최근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한강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. 이에 지난 12월, 한강시민위원회는 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남북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수립과 정책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□ 다만,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원이 총 6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과신설에도 불구하고 분과 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

- □ 이에 현행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폐지, 30명 내외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탄력 적인 남북협력분야 논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